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지침

최근 곡물가격 상승으로 배합사료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축산농가의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도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 2009년부터는 사업주관기관이 '지역 농축협'에서 '시장·군수'로 개선된다. 따라서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대출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해 시·군·구로 신청하면 된다.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정부지침사항

◎사업목적(事業目的)

-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을 특별지원 함으로써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 도모

◎사업개요(事業概要)

- 사업주관: 시·도지사(시·군·구청장)
- 사업부서: 농림수산식품부 자원순환팀·축산정책팀, 농협중앙회 컨설팅부, 농업금융부, 축발기금사무국(협조)
- 지원대상: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가축계열화농가(수직계열화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도, 시·군에서 수직계열화농가 파악 후 대상자 선정시 제외
- 지원내용: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 사업기간: 2009년 1월~2009년 12월
- 지원규모: 25,000억원(신규 10,000억원, 기존 15,000억원)
 - 이차보전예산: 95,413백만원(신규 33,975백만원, 기존 61,438백만원)
- 지원방법: 농협중앙회 자금 지원 후 축산발전기금 이차보전사업비 활용
 - 대출금 지급: 대출약정 후 사료구매실적 증빙자료(세금

계산서 등) 제출시마다 분할하여 지급

※대출취급시 담보취득 제한: 예·적금 담보대출 불가

- 지원조건: 금리 1%, 소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돼지 등 2년 균분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 및 지역농·축협 등
- 농가당 지원한도: 소 100백만원, 양돈 200백만원, 양계·오리 50백만원, 기타 30백만원

※기존(2008년도)에 지원 받은 경우, 축종별 지원한도 중 기 지원금액 차감한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 가능

• 축종별 지원단가:

- 한육우·낙농: 1,200원/두
- 양돈: 100천원/두
- 양계: 650원/수
- 오리: ~~650원/수~~ ○ 3,000원/수
- 기타가축: 사료구매실적에 따라 최고 30백만원 지원
 - 사육기간 또는 출하간격이 1년 이상인 가축: 1년치(사슴, 말), 사육기간 또는 출하간격이 1년 미만인 가축: 6개월치(산양, 토끼, 메추리, 타조)

◎사업추진체계(事業推進體系)

• 사업비 배분

- 농림수산식품부: 시·도별 사육두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배정(별첨) 단, 과부족 발생시 시·도별 전배 조치
- 시·도: 시·군별 사육두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배정.

단, 과부족 발생시 시·군별 전배 조치

※시·도에서는 과부족이 발생할 경우 농식품부에 전배 조치 요청

●사업신청

-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사업신청서는 사업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신용조사서는 동지침 별지 제4호 서식을 준용

●사업자선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육마리수 및 사료구매실적을 고려하여 사업희망자가 지원한도액 내에서 신청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지원대상자별 지원금액을 통보

●사업비 집행

- 대출취급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통보한 지원대상자에 대해 융자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매월(익월 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담보대출 가능여부를 선심사한 후 담보여력이 없는 경우에만 농업자신용보증 지원

●사업실적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료구매자금 지원 결과를 매월(익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매월(익월 2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이자보전금 지급 신청

- 대출취급기관은 농가에 융자를 실행하고 농식품부에 이차보전금 지급신청을 하면 사업실적에 따라 자금 교부

- 시·도지사는 대출취급기관과 협조하여 사료구매자금 지원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개선방향에 대한 협회의 정부건의사항

※본회는 위의 방침에 대한 개선방향을 정부에 건의하였음.

◎**현행 문제점(現行問題點)**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계열화사업체능가는 제외)하고 있으나 오리 사육농가의 대부분이 계열업체에서 사료구매 후 위탁사육 수수료에서 사료비를 정산하는 형태로 사육하고 있어 계열농가를 일방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형평의 문제가 있음

●지원단가의 문제 : 현행 오리사육농가의 수당 지원단가는 65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한육우, 양돈, 양계에 비해 지원기준이 잘못 책정되어 있어 현실적인 지원단가 조정 필요

- 한육우, 양돈, 양계는 2007년도 생산비를 기준으로 2008년도 가격인상분을 반영하여 1회전 소요되는 사료비 전액 지원

◎**개선방향(改選方向)**

●지원대상

오리 계열화사업체는 사료비 인상과 AI 발생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9개월째 경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계열화사업체 중 기사료비, 및 사육비 등 계열화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사육비를 지원받은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지원받지 않은 업체는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확대

●지원단가 조정

【현행】650원/수당 지원단가를 1회전 소요사료비 3,500원/수당으로 사료 소요비용을 현실화 하여 상향 조정

- 2007년도 오리 1회전 사료비는 2,450원(kg 사료비 350원×7kg)+2008년 가격인상분 1,050원(kg 인상가격 150원×7kg) = 3,500원

- 2008년 12월 현재 사료비는 4,340원(kg 사료비 620원×7kg)

※참조(08년 12월 현재 육용오리 생산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본회의 건의사항을 일부 수용하여 650원/수당에서 최종 3,000원/수당으로 상향 조정하였음.